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제도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등 2012년 7월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환경행정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통합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2-2110-7613)

2012년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되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 이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로이 도입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담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및 시행일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의 통합	1. 법률의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 평가법 ('12. 7. 22)
	2. 행정 계획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위 행정계획 구분없이 동일한 절차 및 주민의견 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등 지역적 범위가 넓고, 기본방향이나 지침적 성격의 계획 - [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 등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 계획 - 정책계획은 주민의견수렴 대신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대체 - 개발기본계획은 환경영향평가수준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강화 * 주민요구 시 공청회 개최 의무화, 협의전 주요사항 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 실시 	
	3. 평가 관련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 평가업자의 작성을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로 통합
	4.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서는 누구든지 작성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 평가업자 작성 의무화 *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차등화 	
	5. 평가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기술 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평가서 작성 총괄 	
	6.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허위 작성 등의 처분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 작성 및 협의내용 미이행 등 벌칙 신설 	

2.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5)

2012년 7월 29일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I급(5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II급(195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포획하면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게 되며,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어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

구 분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및 시행일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을 포획·채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야생동·식물 보호법 (12. 7. 29)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5)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I급을 포획·채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상습밀렵 -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포획금지 야생동물 포획, 뒹 등 설치]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순밀렵 - 현행과 같음 • 상습밀렵 - 3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3. 분리배출표시 개정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4)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10. 10. 1]의 준비기간이 2012년 6월로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분리배출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던 “플라스틱류(7종, 영문)” 분리배출 표시가 “페트·플라스틱·비닐류” 등 3종으로 단순화 되어 한글로 표기되며, 전체 분리배출 표시도 총 12종에서 7종으로 줄어들게 됨

구 분	중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및 시행일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 표시 종류 : 총 12종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2종, 플라스틱류 7종) • 표시 언어 : 한글, 영문 혼용 • 표시 위치 : 정면, 측면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 표시 문구 : 표시문자, 분리배출 문구, 세부 재질 • 표시 색상 : 없음 • 실태 조사 : 없음	• 총 7종 (종이, 종이팩, 유리, 캔류 1종, 플라스틱류 3종) • 한글(세부재질만 영문) •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 표시문자, 세부재질 적용 (컬러 인쇄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 색상사용 권장) • 년 1회(지자체) * 환경부 > 법령/정책 > 주요정책 > 자원순환(대분류) > 자원재활용(중분류) > 재활용품분리수거(소분류)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0-139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4)

4.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2-2110-6953)

2012년 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금속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으나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자원의 낭비가 줄어들어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및 시행일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 분리배출 대상품목에 소형가전제품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08. 3. 21) * 지침개정 * ('12. 11. 10)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53)

5.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02-2110-6680)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는 “녹색경영”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기업, 온실가스 관리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

기업 및 기관의 특성에 따라 의무공개항목과 자율공개 항목을 차별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고려 유예기간을 설정(법 개정 : 2011. 4, 시행 : 2012. 9)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및 시행일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정보 공개 제도 미도입	•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2. 9. 30) 환경부 녹색기술경제과 (02-2110-6680)

6. 신규 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환경부 수도정책과(☎02-2110-6869)

2012년 7월 1일부터 수도물 절수를 위해 신규 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절수설비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간 건축물의 용도 및 절수설비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으나, 수도꼭지는 최대 토수유량 1분당 6.0L 이하, 변기는 최대 사용수량이 1회당 6.0~7.0L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등 절수설비의 종류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을 적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계부서 및 시행일	
신규 건축물 및 숙박· 목욕장· 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1. 수도꼭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 • 샤워·욕조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 • 세면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 세면·샤워용 : 다음 기준에 모두 맞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수구 방향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 샤워헤드 방향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5리터 이하 • 주방용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9.0리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 다만, 공중욕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 • 샤워헤드 방향은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 	수도법 시행규칙 ('12. 7)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69)
	2. 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탱크형 대변기 : 최대사용수량이 9리터 이하 • 세척 밸브 부착형 대변기 : 사용수량이 15리터 이하 • 소변기 :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기 :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 단, 로탱크형 대변기는 사용수량이 7리터 이하 •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 : 대변용은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이고 소변용은 사용수량이 4리터 이하 • 소변기 :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회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 	수도법 시행규칙 ('12. 7)
	3.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별 별도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건축물 - 숙박업 - 목욕장업 - 골프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단일 기준 설정 	환경부 수도정책과 (02-2110-6869)